

대구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316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301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5. 17. 체결된 증여 합의해제 계약을 19,3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5. 17. 체결된 증여 합의해제 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 및 제6쪽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행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 사이에 적은 ‘나) 취소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나) 취소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이후인 2017. 6.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40,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2. 1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78,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감정 결과가 아닌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를 채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특별히 당심 감정인 K의 감정방법에 현저한 오류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당심 감정이 당심 변론 종결일에 더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피고가 말소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C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의 범위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은 위 78,7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700,000원(= 78,700,000원 - 40,000,000원) 중 C에게 증여된 공유지분의 비율인 1/2을 곱한 19,350,000원(= 38,700,000원 × 1/2)과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 3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더 적은 19,35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돈 또한 가액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인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위 1,000만 원의 신용대출채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신용대출금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무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은 19,3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신안재, 판사 김석수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구미시 D에 있는 A아파트 L동

[도로명주소] 구미시 M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467.46㎡

2층 467.46㎡

3층 467.46㎡

4층 467.46㎡

5층 467.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미시 D 대 1082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58.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0823분의 40. 끝.

